2007. 12.

條例案審査報告書

1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總務委員會

條例案審査報告書

1. 심사경과

조 례 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1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7.11.06	2007.11.07	2007.12.20	2007.12.20	총 무 과 장
2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11.28	2007.11.28	2007.12.20	2007.12.20	총 무 과 장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기 획 감 사 과 장
4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세 정 과 장
5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	〃	〃	주민생활지원과장
6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	〃	사 회 복 지 과 장
7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12.14	2007.12.14	〃	〃	공공시설관리소장
8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공공시설관리소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를 지원함으로써 우수인재육성과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2조)

나. 장학회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안 제3조, 제4조)

다) 시장은 다음의 경우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음. (안 제5조)

-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제7조에 의한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나.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한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현저히 증가한 지역(연수동)에 대하여 5개통 46개반 신설

- 연수힐스테이트(871세대) : 3개통 29개반 신설
- 연수리슈빌아파트(594세대) : 2개통 17개반 신설

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기능직 결원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타 시군과의 인사교류에 따른 불부합 조정, 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별정직 정원 책정, 한시정원을 상시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운용에 적합하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 : 1,317명 (변동없음)

○ 집행기관 정원: 1,298명 (변동없음)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조정내역 (별표1)

· 본 청 : 554명 → 559명 (증 5명)

- 증원내역 : 6급 1명 / 8급 2명 / 기능9급 1 / 기능10급 1

· 사업소 : 219명 → 214명 (감 5명)

- 감원내역 : 6급 1명 / 8급 2명 / 기능9급 1 / 기능10급 1

○ 직급별 조정내역 (별표1)

· 일반·별정6급 △1 ⇒ 6급 1

· 별정6급 △1 ⇒ 별정8급 1(운동지도사)

· 기능10급 △10 ⇒ 기능9급 4, 일반직 8급 3, 9급 3

○ 한시적 운용 정원의 조정 (별표2)

· 상시정원으로 전환 : 6명

-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 (7급 1, 8급 1)
- 균형발전담당 인력 2명 (6급 1, 7급 1)
- 사업예산 전담인력 2명 (7급 1, 8급 1)

라.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자동차세 급등이 예상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액이 단계적으로 현실화 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중 소득기준을 소유자 본인의 소득으로 하였으나 배우자의 소득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함 (안 제7조의2)

나.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 중「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함 (안 제8조)

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 중 관련법 조항변경에 따라 해당부분을 정비함(안 제10조)

라. 시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 하고 시세감면조례에 같은 내용을 신설함 (안 제10조의2)

마. 현재 200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경감규정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세액이 연차적으로 인상되도록 함 (안 제18조)

바.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해 주는 규정 중 경감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함 (안 제20조)

마.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안이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보장법에 따라 충주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금용도 :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지원

○ 융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

○ 융자한도 : 개인3천만원이하, 단체7천만원이하

○ 융자조건 : 개인 2년 균등상환, 단체 3년거치 5년상환, 이율 연1.5% (연체시10%)

바.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노인복지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 및 기금운용 결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조정 (안 제4조)

- 종전 : 위촉직위원(시의회의원, 노인회장, 읍면동분회장)
- 변경 : 위촉직위원(시의회의원, 노인복지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자)

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 (안 제12조)

-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기금 운용계획 수립
-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

사.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재 사용 중인 "다목적체육관" 명칭을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호암체육관"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목적체육관"을 "호암체육관"으로 명칭변경

아.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재 사용 중인 "충주문화예술회관" 명칭을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호암예술관"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주문화예술회관"을 "호암예술관"으로 명칭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장래에 우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이미 설립되어 운영중인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에 기금을 출연하여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장학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우리 시 관내에는 통합시 발족 이전부터 2개의 장학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 충주시장학회는 1990년 재단법인을 설립, 금년도 까지 21억 원의 자산으로 2,959명의 학생에게 16억 4천 3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 중원장학회는 1991년 설립하여 18억원의 자산으로 2,168명의 학생에게 19억 7천 4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음.

○ 충주시는 시군이 통합된 지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장학회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관성 있는 인재육성시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두 장학회 중에서 시의 시책을 수용하면서 유능한 인재육성에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장학회로써

장학회 통합에 응하고 있는 '충주시장학회'를 선택,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검토결과,

장학금 지원 확대는 물론, 열악한 학사시설을 개선하는 등 지역사회의 주춧돌이 될 인재육성을 위해 본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제4조의 기금결산서 제출, 제5조의 출연중지 및 회수, 제6조의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 등은 이에 맞게 충주시장학회의 정관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기금출연 종료 후

에는 구속력을 갖기 어려운 선언적 의미의 조항이 될 것이므로 본 조례안에 맞춰 충주시장학회의 정관개정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또한, 이 조례안의 효력 및 시의 기금출연 취지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원활한 장학회 운영을 위해서는

시의 간부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이사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만일의 경우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잔여재산이 충주시로 귀속되도록 하는 정관의 변경은 물론,

조례안 중 제3조의 사업계획서 제출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승인사항으로 변경하여 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기한까지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연수택지지구 내에 건립된 연수힐스테이트와 연수리슈빌아파트가 완공되어 주민들이 입주를 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통·반을 신설하여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 연수힐스테이트는 11개동 871세대로 3개통 29개반이 신설되고

연수리슈빌아파트는 7개동 594세대로 2개통 17개반이 신설됨.

○ 따라서 연수동은 현행 77개통 436개반에서 5개통 46개반이 늘어난 총 82개통 482개반이 운영될 예정이며 조례안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시의 업무 형편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총액임금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것이어서 운용상의 문제점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됨.

라.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정부시책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마.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를 폐지하고 현행 법령체계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그동안 생활안정기금은 융자대상자에 대한 보증이 어렵고 융자한도액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융자실적이 부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했던 사업이었으나

본 제정조례안에는 융자대상의 범위와 융자한도액이 확대되어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4조 제4호에서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금 지원용도로 정한 것과 관련하여 한계가 불명확하므로 수수료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되며,

안 제8조 제3항의 재정보증인으로 재정보증을 할 경우 보증인 두 사람에게서 확보할 수 있는 채권액이 융자한도액인 개인 3천만원, 법인·단체 7천만원에 크게 미달하므로 개인 및 법인·단체를 구분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선까지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안 제10조 제3항의 상환기간이 개인과 법인·단체간 상이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생활안정기금 융자와 연계성을 갖도록 같은 조건으로 조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바.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충주시에서 조성한 노인복지기금 9억 1천 8백만원을 운용함에 있어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4조 제4항이 시행될 경우 위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노인들이 소외감과 상실감을 갖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이해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다목적체육관"이라는 명칭이 시민들에게 충주체육관과 혼선을 초래하고 위치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명칭을 "호암체육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본 명칭 변경 건은 2006년 5월 제106회 충주시의회에 "호암스포츠센터"라는 명칭으로 제출되었으나 실내체육관을 연상하기에 부적합하고 국민체육센터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부결된 바 있는 사항임.

아.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충주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명칭이 시민들에게 충주문화회관과 혼선을 초래하고 위치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명칭을 "호암예술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금번에 제출된 "호암예술관"이란 명칭은 위치 인식이나 지칭하는 시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충주문화회관과도 쉽게 구별이 가능한 올바른 명칭이라 판단됨.

4. 질의 · 답변 요지

가.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 : 장학회 정관에 시장과 의장의 이사 추천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답변 : 출연 정도에 따라 점차 변경해 갈 계획임.
▶질의 : 장학회 출연금 회수가 불가능 하므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답변 : 잘 운영되도록 노력 하겠음.

나.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1개 통에서 관리하는 세대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답변 : 규정은 없으나 현재는 통장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고 관리가 용이한 지역을 묶어 지정하고 있음

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변경할 경우 채용방법은?
○답변 : 현재 6명이 결원이므로 신규로 채용하게 됨.
▶질의 : 교통과의 단속이 부적합한 신분은 무엇을 말하는가?

○답변 : 일용직은 단속 권한이 없음. 기능직으로 교체하려는 이유임.

라.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없음

마.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질의 : 악성채권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답변 : 신용보증 증권을 활용하거나 재정보증 등을 활용하여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음.
▶질의 : 저소득층에서 신용보증이나 재정보증 등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임.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서 보증을 받는 어려움을 더는데 최선을 다 하겠음.
▶질의 : 기금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답변 : 없음.
▶질의 : 이차보전은 얼마나 해 줄 계획인가?
○답변 : 융자 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전토록 하겠음.

바.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없음

사.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없음

아.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없음

5. 심사결과

가.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의결
- 최저 지원한도 반영(수정안 참조)

나.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라.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마.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수정의결
- 채권확보 및 상환방법 등 수정(수정안 참조)

바.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사.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아.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붙 임

가.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수정안 1부.
나.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라.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마.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수정안 1부.
바.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사.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아.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지방세(시세) 수입의 1퍼센트 이상을"로 수정한다.

〈수정안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출연금) 시장은 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2조(출연금) ---------- 지방세(시세) 수입의 1퍼센트 이상을 --------.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4호 중 "비용"을 "수수료"로 한다.

안 제8조 제3항 중 "2인 이상으로 한다."를 "2인 이상으로 하되 합산하여 산출한 재산가액이 채권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0조 제3항 중 "상환하여야 한다. 단, 개인의 경우 2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상환하도록 하고, 개인은 2년거치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개인·단체(법인)모두 1~2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계약 만료후 3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임대계약연장 등) 3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부칙 중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조제목을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으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제3조 제9호를 삭제한다.

〈수정안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생략) 1.~3.(생략) 4. 「지역신용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나.(생략) 5.~8.(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제정안과 같음) 1.~3. (제정안과 같음) 4.---------- ---------- ---------- --- 수수료 가.~나.(제정안과 같음) 5.~8.(제정안과 같음)
제8조(지원신청) ①~②(생략) ③제2항 제3호의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으로 갈음 할수 있으며 인적보증에 의한 재정보증의 경우 재정보증인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으로 1만원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자 2인 이상으로 한다. ④(생략)	제8조(지원신청) ①~②(제정안과 같음) ③---------- ---------- ---------- ---------- ---------- ---------- 2인 이상으로 하되 합산하여 산출한 재산가액이 채권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④(제정안과 같음)
제10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②(생략) ③대여기간은 단체.법인은 3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단개인의 경우2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②(제정안과 같음) ③---------- ---------- 상환하도록 하고, 개인은 2년거치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개인.단체(법인)모두 1~2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계약 만료후 3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임대계약연장 등) 3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제 정 안	수 정 안
④~⑥(생략)	④~⑥(제정안과 같음)
부칙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조례 제45호, 1995. 1. 14)는 이를 폐지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①(제정안 부칙 제2조 본문과 같음)
《 신 설 》	②「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제3조 제9호를 삭제한다.